

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 부칙 개정(안)

대통령령 제34735호 스포츠클럽법시행령 부칙

1. 개정 이유

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 개정을 통해 사업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

2. 주요내용

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특례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부칙

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해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대통령령 제34735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대통령령 제34735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----- ----- ----- ----- 각 스포츠클럽 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해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.